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4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김소희·김성원·박준태

이종욱 • 김예지 • 고동진

박덕흠 • 곽규택 • 서범수

주호영 • 우재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 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.

그러나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,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·화력발전과의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.

이에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·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·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714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함.

법률 제 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"원자력발전에"를 "원자력발전·석유류시설·천연가스시설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원자력발전에"를 "원자력발전·석유류시설·천연가스시설에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원자력발전에"를 "원자력발전·석유류시설·천연가스시설에"로, "원자력발전소가"를 "원자력발전소·석유류 정제 및 저장시설이"로, "원자력발전소가"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시·군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하여 부과·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시・군 조정교부금) ① 시	제29조(시・군 조정교부금) ①
•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	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	
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	
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	
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	
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	
는 금액을 관할 시·군 간의	
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	
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	
여야 한다.	
1. 시・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	1
세·도세(화력발전· <u>원자력발</u>	<u>원자력발전</u>
<u>전에</u>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	·석유류시설·천연가스시설
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	<u>에</u>
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・도지사는 화력발전・ <u>원</u>	③원자
<u>자력발전에</u> 대한 각각의 지역	력발전・석유류시설・천연가스
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	시설에
분에 따라 관할 시·군에 각각	

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 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·군 및 제29조의2제2 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.

1. 화력발전 · <u>원자력발전에</u>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화력발전소 · <u>원자력발전</u>소가 있는 시 · 군

2.	(생	략)
(4)	(생	량)

1원자력발전·석유
류시설·천연가스시설에
<u>원자력발전소</u>
·석유류 정제 및 저장시설·
천연가스 제조시설이
2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